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6-10

청렴韓 세상

201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1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 3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 4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7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10
제5절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 13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21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 21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23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2
3. 특혜발생 가능성 ---- 41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50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 58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68
7. 접근성과 공개성 ---- 78
8. 예측 가능성 ---- 85
9. 이해충돌 가능성 ---- 92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 103

1. 공정 계약 ---- 105
2. 국민 알 권리 ---- 120
3. 국민 안전 ---- 131
4. 규제 개선 ---- 147
5. 재정누수 방지 ---- 157
6. 책임성 강화 ---- 164

제3장 자발적 개선사례 • 177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 1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 201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 211

PART

Ⅰ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필요성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3.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1. 2015년도 평가 기준

▶ 부패영향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됨

- 이중 준수의 용이성은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기준의 적정성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 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2. 부패영향평가 기준 주요 개정사항(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현행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기준에 반영

▶ 주요 개정사항 ; 평가기준 개선·보완

〈 현 행 〉

평가분야(3)	평가기준(9)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 개 선 〉

평가분야(4)	평가기준(11)
준 수	준수부담의 합리성<변경>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집 행	<현행 유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대체>
	재정누수 가능성<대체>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분리>
	공개성<분리>
	<현행 유지>
부패통제	<현행 유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신설>

- 위탁·대행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부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대신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으로 기준 대체

- 각종 복지예산 및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대신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기준 대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 도입의 필요성이나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적용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기준 신설

-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명칭 변경(준수부담의 적정성 → 합리성) 및 기준 분리(접근성과 공개성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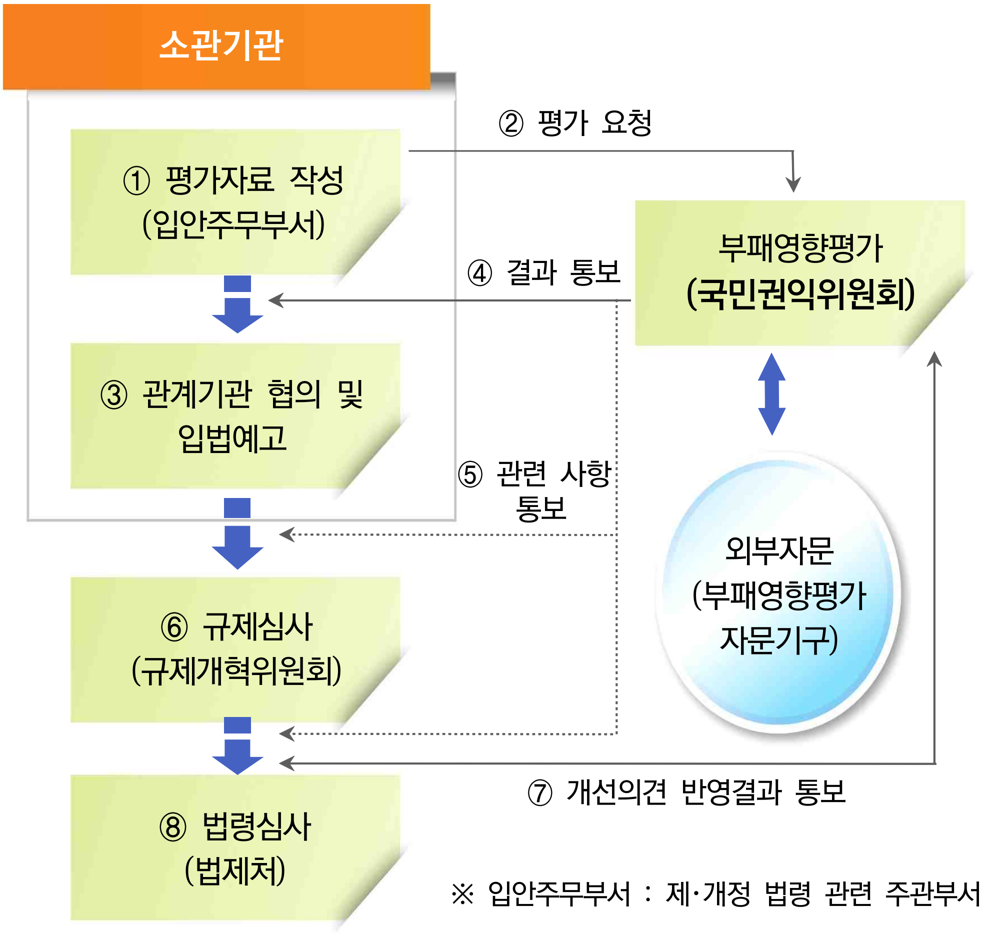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법령 등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125(2016.4.11.)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함께 첨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3)
- 제정법령(안) 또는 전부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함께 첨부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서식('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5~61)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영 제30조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영 제32조제1항)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영 제32조제2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5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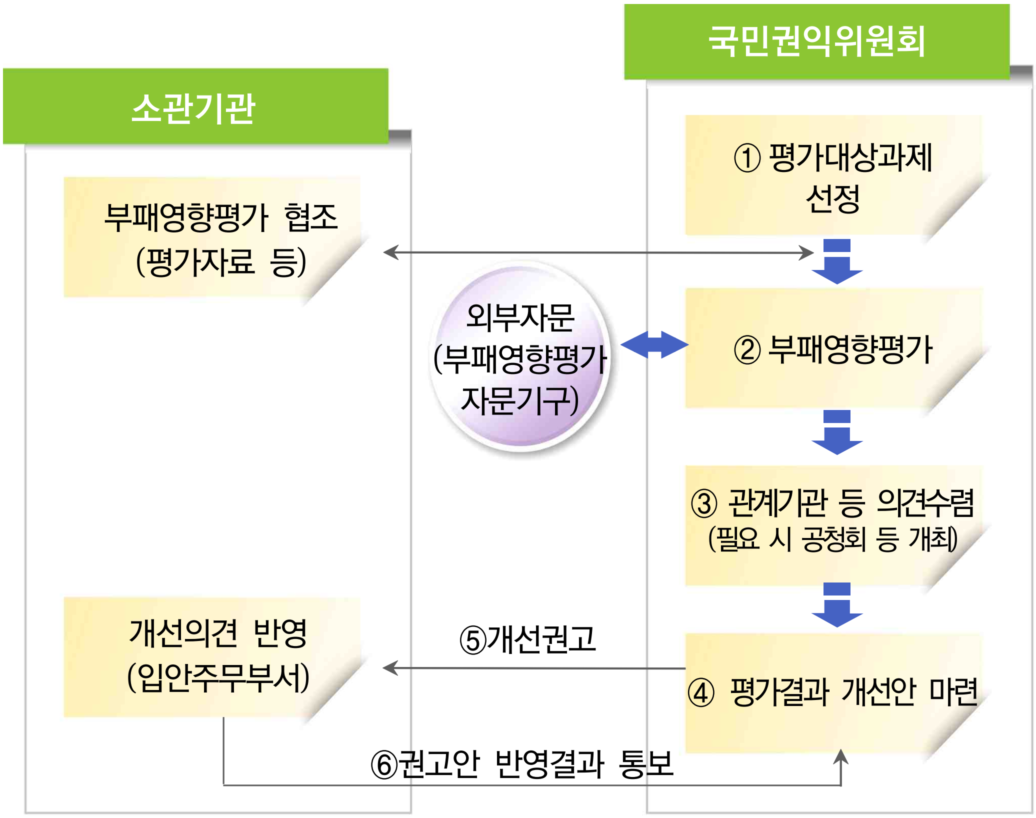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현행 법령 관련 주관부서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제·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부정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법 제29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법 제29조제4항)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4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영 제30조제5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5절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1.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5년도에는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집 발간·배포, 설명회,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지방 재정개혁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3개 과제를 발굴하여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4년에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한 후 2015년도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수정 및 변경을 완료하여 2016년 1월1일부터는 개편된 기준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720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32개의 법령안에서 401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8.7%로서 2014년의 94.9%에 비해 3.8%p 향상된 수용률을 보였다.

현행법령 평가는 중앙·지방 재정개혁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뭄상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관리 분야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질인증 및 장학관련 행정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질적·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법령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패영향평가를 명문화한 것을 확인하였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와 사규 제·개정 대상 확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율평가 체계 정착·운영을 도모하였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평균 처리기간은 15.8일로, 전년(15.9일)과 유사하였고, 총 132개 법령안에서 401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8.7%로 나타났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73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1,720개의 법령안을 평가하였고, 그 중 1,588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32개의 법령안에서 401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5.1.1.~12.31.) 》

접 수	평가결과 통보			수용률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730개 법령	1,588개 법령	132개 법령	401건	98.7%

나.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별(1,720개)로는 산업개발 관련(499개, 29.0%), 일반행정 관련(334개, 19.4%) 법령이 많았고, 개선법령별(132개)로는 산업개발 관련(52개, 39.4%), 환경·보전 관련(21개, 15.9%) 법령 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5.1.1.~12.31.) 》

분야 / 법령	계	일반행정	교육문화	국방보훈	재정경제	산업개발	과학정보	환경보건	형사사법	기타
평가법령 개수	1,720	334	156	102	195	499	70	297	66	1
개선권고 법령개수	132	20	17	11	3	52	6	21	2	-

다.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항목별로는 3개의 평가영역 중 집행기준의 적정성(156건, 38.9%)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9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이해충돌 가능성(108건, 26.9%),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99건, 24.7%), 제재규정의 적정성(72건, 18%)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132개 법령 401건) 》

평가영역	평가기준	개선의견 건수
준수의 용이성 (90건)	준수부담의 적정성	7
	제재규정의 적정성	72
	특혜발생 가능성	11
집행기준의 적정성 (156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99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7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0
행정절차의 투명성 (155건)	접근성과 공개성	13
	예측 가능성	34
	이해충돌 가능성	108
합 계		**401**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2015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중앙·지방 재정개혁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최근 가뭄상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관리 분야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질인증 및 장학관련 행정 분야 중에서 현행법령 상 고질적·관행적 부패유발요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투명성 제고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선정된 과제들의 제반 운영현황 및 세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 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의 발굴과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부터 자치법규까지의 수직적 분석과 유사 분야의 관련 법령까지의 수평적 분석도 실시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켰다.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5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 재량 남용, 정부 재정 낭비 등 부패발생요인이 있어 5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천수 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허가량 보유로 하천수가 낭비되고 무단취수가 방치되고 있어 2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과 하천수 관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FTA 대응 차원에서 운영중인 지리적표시제, 러브미사업, 쌀 품종명 관리마크 및 지방자치단체장 품질인증제도가 양적증가에만 치우쳐 유사제도 중복, 제도적 운영 근거 부재, 인증기준 미흡, 인증 남발 등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농·어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정비 등 1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개선안을 통해 농·어가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지자체 설립·출연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에 대한 과도한 출연방지, 국가-시·도-시·군·구 장학재단 장학금간 중복수혜 관리,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의무화,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반환 근거 명시 등 6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율평가기반의 구축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각급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24개 기초자치단체(인구 50만 명 이상)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기관(34개 기관)이 부패영향평가 체계를 구축 완료한 반면, 24개 기초자치단체 중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명문화된 기관은 22개 기관이며, 2개 기관은 아직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것도 있어 법령과 유사하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제·개정되거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규공개관리규정의 제도화, 사규의 공개유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규공개관리규정과 제·개정 예고 시스템 등이 정착되도록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하였다.

’15년에는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접근 용이성, 사규 제·개정 대상 확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144개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사규를 공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정보공개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4개 기관을 제외한 140개 기관이 사규 내용과 제·개정 현황을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배치하는 등 사규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규 제·개정 대상 확정 여부는 144개 기관 중 91개 기관(63%)이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를 별도로 확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예고 대상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거나 추상적·주관적인 제·개정 사유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ART

Ⅱ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 가능성
9. 이해충돌 가능성

▶ 기준별 사례목차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검토내용	사 례
준수의 용이성 (수요)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저작권법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변호사법 시행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군인사법 시행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사례 1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 4. (생략)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생략)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사 혁 신 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신청인	인사혁신처(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황

-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제3조와 별지 제1호서식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을 할 때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제12조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규정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 없는 업무에도 주민등록번호 제출의무 부과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 없는 사무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정관 변경허가 · 해산 신고 · 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4-25-30호, '14.12.22.) >

3. 결론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정관 변경허가·해산 신고·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선의견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제12조 제1 · 2 · 5 · 6 · 7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개선결과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71호, 2015.6.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u>생년월일</u>(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u>생년월일</u>·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u>생년월일</u>·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u>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u>를 처리할 수 있다.

사례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⑦ (생 략)

【시행규칙】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 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현 황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 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법 제8조)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산정방식 중 **개시시점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법 제10조제3항)
  - **일반적인 산정기준** :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예외적인 산정기준 :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
- 평가대상조문(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에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삭제**하는 것임
  - 「지방세법」은 2011.1.1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등으로 이관되어 규정

문제점

- 개정안에서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를 삭제(특별한 삭제사유는 없으며, 지방세법 분법으로 해당규정 이관에 따른 삭제)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격 **(예외적인 산정기준)**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일반적인 산정기준)**로 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부동산(토지를 포함)은 개별공지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시시점지가가 적은 경우(개별공시지가)에는 많은 경우(실제 매입가격)보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많음

개선의견

-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기존에 규정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에 따른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개선결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제11조(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8호, 2014.7.14.)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관

사례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3.(생략)

4. <u>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u>

5.~ 7.(생략)

현 황

- 국방부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제도를 운영

※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같은법 시행령 별표) 〉

구 분		장비기준 1	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톤 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톤 이상	연면적 100㎡ 이상
섬 유 제품류	모 자 류	공업용 고속재봉기(96종 또는 103종) 8대 이상	공업용 고속재봉기(2본침기) 2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계급장류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또는 직조기 1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아울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에도 허가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 군복 및 군용장구 현황>

-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문제점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요건 변경

당　　초		개 정(안)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관련 시설(기계·장비 등)의 발전에 따른 동종시설 고도화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였음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협의로 해석시에는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의견

- 허가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취소 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시설을 통한 생산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 **허가신청시의 시설능력** 또는 **허가신청시 시설의 생산 능력** 등 **일부 보완**을 통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개선결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72호, 2016.1.19.)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사례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⑧ (생 략)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⑩ (생 략)

현 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규정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취소 사유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③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문제점

- 제정령안 제10조제9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이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할 경우, 지정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로비행위 등 부패 유발 가능성

개선의견

- 제정령안 제10조제9항제1호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제정령안	개선의견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⑧ (생 략)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⑩ (생 략)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⑧ (제정령안과 같음)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⑩ (제정령안과 같음)

사례 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현 황

- 개정안 〔별표 2〕 제1호가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을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을 규정

문제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일 불명확**
  -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적용 기준을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규정하여 최초 과태료부과 시 기준일만 규정할 뿐, 동일한 위반행위에 따른 2차·3차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적발일 기준일지', '처분일 기준일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 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을 '처분일 기준'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늦추거나 무마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또한, 2차·3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과태료 처분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최근 1년'이라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부과 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개선의견

- 〔별표 2〕 제1호가목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개선결과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98호, 2015.7.1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u>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u>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사례 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중 2호 개별기준의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2호	30만원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3호	50만원

현 황

- 관광진흥법 제86조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평가대상 조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2개를 추가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50만원)

문제점

-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적용기간 및 산정기준 미규정**
  - 위반횟수의 적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산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과태료 부과처분일'이나 '위반행위 적발일' 등으로 달리 적용할 우려**가 있음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 미흡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개정안 제41조제2항에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개선의견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 명확화

- [별표5] 과태료 일반기준에 위반 횟수 산정기준 및 **위반횟수의 적용기간 규정 마련**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 별표5. 각 위반행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

개선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2	30	60	1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3	50	100	100

사례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7]

<u>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u>(제2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u>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u>**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생략)

1) ~ 3)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현 황

- [표 7] 제1호나목은 인증기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을 규정**

문제점

- **위반행위 처분의 기준을 최근 5년이라고 하나,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 이내임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 기간과 유효기간과 비교 시 과도한 행정처분임**

※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최대 처분기준(3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월)을 가중할 때에도 3년 6월임

개선의견

◎ **행정처분의 기준기간을 유효기간과 비교해 조정**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별표 7]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3. 특혜발생 가능성

사례 1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2(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요청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황

- 「변호사법」제21조의2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도록 규정
  -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등 **사건 수임**이 **제한**됨(변호사법 제31조의2)
- 개정(안) 제21조의2제10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연수**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경우 비용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점

-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협회의 공익적 의무**에 해당하는 점, 타 전문자격제도와의 **형평성**, 판·검사나 공무원 등으로 임용이 예정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타당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 입법정책적으로 실무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의 연수비용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법률에 지원근거 마련
    ※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취업률이 50% 내외인 점에 비추어 내년 1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2,000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합격률 75%)중 취업인원은 500여명 정도로 예상('11. 5, 국민일보)

- 따라서 법률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 개정(안)은 별도의 정함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요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지원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
    ※ 금융위는 수습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회계사(1년 이상의 실무수습 필요)를 위하여 3억원 상당을 공인회계사회에 지원하였으나, 그 후 미취업 사례가 감소하여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분 되는 등 지원필요성 감소로 '10년부터 예산 편성대상에서 제외

개선의견

- 법무부장관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에 대한 지원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과정을 설치한 경우'와 같이 **제한적·보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요건을 특정**하여 규정

개선결과

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례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제36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법 제34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업무
3. <u>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평가 업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u>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

현 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으면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 및 운영할 수도 있음(법 제32조 및 제53조)
  - 또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도 조사**하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업무**도 담당(시행령 제정안 제36조 및 제47조제3항 제3호)

문제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일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도 조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및 단지조성 원칙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 이러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될 개연성이 있어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또한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일 경우 동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 가능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인력기준 및 인증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평가
  - 이러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개선의견

- **진흥원이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는 타 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이 시행하도록 규정**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산림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시행하도록 규정**
  -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담보**

개선결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 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사례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3(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비용 산정 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치고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현 황

- 개정안 제2조의3의 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관리지역내에서 공공주택을 신속히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철거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문제점

건축물 철거비용 산정업체 선정기준의 구체성 결여

- 본문 단서 규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시기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철거비용 산정 **업체 선정을 두고 지자체의 자의·편의적 재량권**이 **행사**될 **여지**가 있음
- 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건축물 철거비용 산정업체**들로부터 **제한입찰 참여** 청탁 등 **로비 가능성** 우려
- 결과적으로 철거비용 산정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제한요소나 적용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일관성 저해** 및 **특혜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의견

건축물 철거비용 산정업체 선정기준 명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정안에 구체화·객관화 필요**

개선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97호, 2016.3.29.)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u>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사례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농가당 지급금액 상한과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축산보조금의 농가당 지급금액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그 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5회 지급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축산보조금의 농가당 지급금액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하고, 그 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회 지급한다.**

현 황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고(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 신설)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정(대통령령)에서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액의 상한 등 필요사항을 위임받아 **보조금의 상한과 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이 없음**

문제점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상한액과 지급 횟수**에 대한 **명시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제1항 '친환경축산보조금의 농가당 지급금액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그 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5회 지급한다' ⇒ 지급상한액은 3천만원이며 5회로 나누어(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 가능
- 또한 **보조금 지급 상한액과 지급횟수만을 명시 하였을 뿐 보조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 집행기관 및 담당자에 과도한 재량 부여 및 보다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려는 자의 불법 로비 가능성 등 부패발생요인 존재

개선의견

-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상한 관련 조문의 명확화와 지급대상별 친환경축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필요**

개선결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 2016.5.4.)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액의 상한과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사례 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3.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현 황

- 국제순항 크루즈선[1]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이면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문제점

- **신용상태 판단기준 부재**
  -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허가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 제4조에서는 ‘①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③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어 카지노업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 행사의 우려가 있음
-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기준 불명확**
  - 또한 제정안 제4조 제1호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의 경우에도 적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등이 없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음
  - 또한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허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

    ※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법률 제2조 제4호)

개선의견

-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규정 마련

개선결과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476호, 2015.8.3.)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카지노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영업 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사례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현 황

- 개정령안 제47조의2 4항 3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 신청에 따른 **연장** 범위를 **규정**

문제점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연장기준 불명확**
  - 시행령 제47조의2 4항 3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사전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신청 : 국공유 토지 점·사용허가를 통한 공장 및 기타 시설물 축조,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40 이상 예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제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 시 90일 이내 심사, 필요 시 3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 **사전심사 청구 기간 연장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본 건에 관한 **행정청의 자의·편의적인 재량권 행사 우려**
- 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편·부당한 부담 초래**
- 결과적으로, 사전심사 청구기간 연장요건에 관한 제한요소나 적용 기준이 없을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저해**

개선의견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기간 연장요건 구체·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한 **적용기준을 개정안에 구체화·객관화 필요**

개선결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2호, 2016.2.11.)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u>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사례 1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0조의11(업무의 위탁)

1. 법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군인사법」 제46조의4제5항을 근거로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방자격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규정

< 국방분야 국가자격 현황 >

○ 근거법령
 - 군인사법 제46조의 4(2012. 12. 18)
 - 시행령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10(2013. 6. 17.)
 - 시행규칙 제83조의2 내지 제83조의10(2013. 6. 26.)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현황 및 향후 계획
 - 현황 :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 계획 : 2016년 이후 매년 2개 종목 이상 30여개 종목 신설
○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행 : '14~'15년, 3개 종목 년 1회(주관 :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문제점

위탁 업무를 포괄적·불명확하게 규정

-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라고 규정하여 위탁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업무 위탁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

위탁 요건에 대한 기준 없이 특정 단체에 위탁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요건 등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없이**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국방 관련단체'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어 법정위탁인지 지정위탁인지 알 수 없음

- 행정청에서 임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우려와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요건을 정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용이해 수탁을 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불법적으로 로비할 가능성 내재

국방 관련단체의 범위가 불명확

- '국방 관련단체'가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어떤 기관(단체)이건 국방 관련단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

※ 수탁기관(단체)이 공공기관인지 민간 법인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수탁기관(단체)의 지위·성격에 맞는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 마련이 어려움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미규정**
  -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할 우려와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접근성·투명성 제한

- 수탁기관(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규정이 없어 위탁업무의 관리·감독 및 통제가 어렵고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탁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여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개선의견

- **위탁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인적·물적 기준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

- **위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수탁기관(단체) 선정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 법정위탁, 지정위탁 등 위탁 방식에 맞춰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수단 마련**
  - 공무원이 아닌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처분 규정 마련

※ 위탁 취소,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며, 위탁 취소, 벌칙에 대한 규정 마련 시 위탁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수탁기관(또는 단체)의 종류, 위탁 방법 등에 따라서 반영 여부 및 제재수단 결정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시행령 개정사항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60조의11 (업무의 위탁) 1. 법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2. …………………… 3. ……………………………………… 4. …………………………………………………………
<신설>	**제△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 2. 별표△에서 규정한 조직·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3. ……………………… 4. …………………………… 5. 그 밖에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조제△항에 따라 국가자격개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및 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공단(공사) 2. △△△법 제△조에 따른 △△△△ 3. **제△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 3. ……………………………………………

법률 개정사항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경우 2. 위탁받은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3. ……………………………… 4. ……………………………………………………
<신설>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조제△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사례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수산물 생산자단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35조의 수산물저온유통체제 등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조합 및 수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법 제40조에 따른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법 제41조의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법 제 44조의 수산물의 수입추천, 법 제45조의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법 제47조의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8조의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법 제49조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법 제50조의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법 제51조의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법 제52조의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수산개발원,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및 생산자단체 및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46조의 수산물 규격화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표준협회 및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 황

- 제정안의 제31조제3항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수산물 유통협회, 수협조합,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 〉

위탁업무	위탁기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조합 등
수협조합 등과 생산자간 계약생산에 관한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수산개발원,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수산물 유통협회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산물 수매 등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수산물의 수입 추천, 수입이익금의 징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산물 규격화 관련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표준협회, 수산물 유통협회

문제점

수탁기관 임·직원 등의 뇌물수수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수탁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 특히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표준협회, 수협중앙회, 수협조합,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은 위탁 업무의 성질, 중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형법」 제129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선의견

-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 외에도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의 위탁과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수탁·지정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적용 검토가 필요

유사입법례

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 제11321호, 2012.2.17.)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사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현 황

- 개정안 제3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규정
  - 신설된 제4항은 인증기관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
  -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문제점

- 제3조제4항에서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 **인증기관이 감독기관인 운영기관과 결탁할 경우, 인증기관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사업 유지 가능**

※ 행정처분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감독업무를 운영기관에 위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내용 파악 곤란

개선의견

- 개정안 제3조제4항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
  - “건의할 수 있다”를 “건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개선결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5호, 2015.11.18.)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사례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출연금의 지급) ① 국시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현 황

- 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제정('15.12.23)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 규정 마련
  ※ 위임사항 : 출연금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의 설립 형태가 그동안 법률상 민간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같은 특수법인과는 달리 국가의 출연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에는 정부의 출연금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입될 예정

- 따라서,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금은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

※ 출연금 :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가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

- 출연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거나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 관련 사례 >

○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도 연구·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2억 2천만원 중 사내복지기금에 4억 5천여만원,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납부에 1억 7천여만원 등 총 6억 3천여만원을 부당 사용 (연합뉴스, 2013. 10. 21)

문제점

무분별한 출연금 집행을 초래하는 출연금 사용용도 미규정

-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사용용도를 결정·지원할 우려
- 또한,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도 지원받은 출연금을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할 소지

출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미비

-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수규정 등 별도의 관리·감독수단 미비로 예산낭비 초래

출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 출연금 집행실적 사후관리 규정 미비

개선의견

① 출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시원의 주요 업무인 **시험시행 및 관리, 시험문제 개발, 연구비용** 등으로

한정하여 출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②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용한 **국시원의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출연금 사용의 사후관리 강화

③ 출연금에 대한 별도계정 신설 규정 마련

④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 의무화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OO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집행의 책임성 부여

개선결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산림사업보조금 : 산림관리기반시설(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된 예산

현 황

-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등에 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그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또한, 사업자가 지원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

※ 산림청 예산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정부 총지출(A)	8.8	32.5	123.9	255.3	309.1	325.4	342.0
산림 예산액(B)	0.04	0.15	0.73	1.62	1.67	1.80	1.85
비중(B/A)	0.50	0.45	0.59	0.63	0.54	0.55	0.52

※ 산림청 부분별 예산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비고
합 계	16,742(100.0)	17,951(100.0)	18,488(100.0)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035(36.0)	6,285(35.0)	6,760(36.6)	
산림자원 이용	4,410(26.3)	4,267(23.8)	4,590(24.8)	
산림자원 보호	4,512(27.0)	5,617(31.3)	5,299(28.7)	
산림행정지원	1,785(10.7)	1,782(9.9)	1,839(9.9)	

문제점

-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산림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림사업 보조금에 대한 유용·횡령 등에 관한 부패사례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관리·반환 받기 위한 제재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관리가 부실 또는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음

< 관련 사례 >

○ 창원지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원의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은 협의로 ○○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곽모씨와 산림청 공무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CBS, 2011.04.28.)

○ △△시가 지난달 강원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에서 산림사업 보조금 환수 소홀 등의 부적정을 이유로 시정14건, 주의 8건 등 총 49건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강원도민일보, 2010.12.27.)

개선의견

- 산림사업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횡령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리·감독 수단 마련

◎ 산림사업 보조금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반환을 요구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자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 규정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신설>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산림사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보조사업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산림자원보조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사례 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9조(창업 및 제작 지원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제작자로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3.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
4. 그 밖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현 황

- 법률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창업 및 제작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 평가대상 조문 제9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9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
- 또한, 제9조제3항에서는 지원방법을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공모 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우려

- 법률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이라고만 규정할 뿐 공모 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우려

< 전문가 자문결과 >

○ 공모 방식에 의할 경우 최소한의 자격이나 요건이 없어도 공모에 응한 자 중에서 무조건 지원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지원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의견

창업 및 제작 지원 **공모에 대한 심사 기준 마련**

※ 사업 특성상 심사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 검토

개선결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4호, 2015.11.18.)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u>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u>

7. 접근성과 공개성

사례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④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모두 송부하고, 서면심의서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현 황

- 시행령 제7조제4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방식 및 의결조건'을 규정함

문제점

-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여야 함
  - **서면심의**가 무분별하게 **개최될 경우 요청인 참여제한, 심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어려워**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
  - 시행령 제8조는 '통합심의 요청 시 신청인의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어, 서면심의가 남발 될 경우 **신청인의 회의 참석**이 **근원적**으로 **배제**되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및 **대국민 이해·수용성 저하** 우려

서면심의·의결 방법의 명확성·구체성 등 결여

- 심의서를 송부 받고 서면심의서를 제출한 위원의 전원 찬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의서는 송부 받았으나, 서면심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도 포함한 전원 찬성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함
- 위 조항은 다소 추상적이고 중의적인 불확정개념으로서,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자의적인 재량 또는 판단여지 가능성 존재

개선의견

서면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절차를 법령에서 명확·구체적으로 규정**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토록 권고
- 서면심의 절차는 소속 위원 모두에게 심의서를 송부하고, 모든 위원이 송부한 서면심의서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토록 권고

유사입법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008호, 2015.1.20.)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2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등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 황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6.22. 제정, 2015.12.23. 시행)은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최상위법이 필요하게 되어 제정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
- 동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 선발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선발계획의 공고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선발계획 정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비리행위 발생 우려
  - 특정인에게 선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선발계획 공고는 채용 직전에 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채용 가능

개선의견

- 선발계획의 공고 시기를 명확히 규정
  - 해당 조문에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ㅇㅇ일 전까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선발계획 공고 시기 명확화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등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등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ㅇㅇ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ㅇㅇ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례 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u>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u>

<u>2.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설·설비에 관한 사항</u>

<u>3.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현 황

- 법률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조문 제10조제2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문제점

- 지정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정될 우려**
  - 지정요건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정될 우려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접근성 장치가 없어 국민 등의 참여 기회 저해**
  - 국민, 기업, 단체 등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장치가 없어 접근 기회를 제한

개선의견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민,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장치 규정 마련**
  - 지정 현황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

개선결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4호, 2015.11.18.)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예측가능성

사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보호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황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 통일부장관이 보호여부 결정
- 1차 신청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5년이내에 재신청
- 통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보호여부 통지, 장관의 직권으로 통지기간 30일 연장

문제점

- 보호여부 통지기간이 행정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 우려
- 신청자가 신속한 결과통지를 받기 위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우려

개선의견

- 기간연장의 사유와 연장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개선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보호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생략) ② --------------------------------- ---------------------------------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례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현 황

-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4.6.3.)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규정이 신설됨**
  -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2년간 2회 이상)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과징금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을 추진하며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세부절차 등에 관한 조항은 없음**
- 개정안(시행규칙)은 과징금 징수절차를 규정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문제점

-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예측이 곤란

※ 과징금의 부과 절차는 ①위반 사실의 확인 ②위반 정도의 확정 ③과징금 규모의 결정 ④과징금의 부과 ⑤과징금 납부 ⑥미납부시 처리 ⑦과징금 환급 시 처리 등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 필요

개선의견

-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1호, 2016.2.3.)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u>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사례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을 확보 할 것
2.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거나 인증기관이 파행 운영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증기관 지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690호, '15.5.29. 시행) **제16조의2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 **체력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문제점

-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부령)으로 정한다 하였으나**
  -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요건에 대한 예측곤란**(시행규칙에는 처리 절차만을 규정)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시에는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영 제10조의3제2항, 제11조의2제5항)하나, 체력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 이외의 세부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부재

< 체력인증기관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별지 12호 서식)	접 수	심사 (90일이내)	결 재	지정서 발급 (유효기간:3년)
<지정신청서, 증빙서류>	<지자체>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증빙서류 :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

개선의견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절차 외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예측가능하도록 **하위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지정 기준의 세부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이 법의 **다른 기관 지정과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를 연간 3억원(1소당) 정도 예산 지원 가능하므로 특정기관 지정에 따른 특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개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0호, 2016.2.3.)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9. 이해충돌가능성

사례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현 황

- 개정안 제27조는 지구심의회의 구성, 위원자격, 연임, 해촉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개정안 제35조는 본부심의회의 구성, 위원자격, 연임,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문제점

-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의 무제한 연임 허용**
  - 위촉위원이 **연임을 위해** 행정청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
  - 위원직의 장기 독식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제한**
-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개선의견

①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②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개선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1호, 2016.1.19.)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사례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시책수요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시책수요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 지방행정·재정, 지역정책·개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현 황

-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지자체에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시책수요사업심의회"를 설치·운영(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민간)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1회 연임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문제점

- 시책수요사업심의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
  - 시책수요사업심의회는 지역 역점 사업이 있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필요
  - 개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특정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부재
- 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임기 등 명확한 규정 부재**
  -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며 위원 임명 및 위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에 위촉된 경우 임기 및 연임규정이 없고
  - 주무부처인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에 대한 심의회 구성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무부처에서 심의회 구성을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음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의 불법로비 가능성 내재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개선의견

- 시책수요사업심의회에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필요**
  - 특정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공정한 심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시 해당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마련

- **행정부 내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 마련**
  - 장기위촉 배제를 통한 심의회의 객관적인 운영 제고
- **심의회 내·외부 위원에 대한 구성비율 규정 필요**
  - 심의회 위원 구성 시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외부 민간위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로비 가능성 차단
- 심의의 공정성 등을 해친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 마련**
  - **회피의무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0조의2(시책수요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책수요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u>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0분의 0이상이 되어야 한다.</u> ④ <u>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u>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10조의3(시책수요사업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 장관은 심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사례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5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현 황

- 시행령 제50조의3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규정

문제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5.8.11. 법률 제13462호)됨에 따라,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협의된 사항임
- 현재 **개정안 조문은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격, 임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추후 법률 개정 **시 보완 필요**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정·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부재

- **위원회는** 일반국민들이 소유·거주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심의 하고,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결정**되므로, 위원회 위원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이 요구되나,
- 본 시행령(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관계**를 **사전에 배제·차단**하여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됨.
- 특히 위원회는 개인, 각종 단체, 기업 등의 **재산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개인·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본 시행령(안)은 **부정·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미비**

개선의견

≪법률 개정사항≫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개선결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u>**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절

행정내용별 주요 개선 사례

1. 공정 계약
2. 국민 알 권리
3. 국민 안전
4. 규제 개선
5. 재정누수 방지
6. 책임성 강화

1. 공정 계약

사례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4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은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 ※ '방류종묘인증제'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말함(법 제42조의2제1항)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 부재**
  -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우려
- 전문기관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운영할 우려**
  - 개정안에서는 위탁대상을 규정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인증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이 **뇌물 수수 등 부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묘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탁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제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시 제재가 불가능

개선의견

-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 기준마련이 복잡할 경우 대강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 **전문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명시한 규정 삭제**

-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의제규정을 법률에 신설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시행령 개정사항

개 정 안	개선의견
제24조의2(전문기관) ① (생략) 1. (생략) 2.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2(전문기관)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 법률 개정사항

현 행	개선권고안
<신설>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조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선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제24조의2(방류수산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사례 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입찰제한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입찰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제재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	법 제18조	

위반내용	근거 법령	처분기준
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항제1호	
가. 2억원 이상 뇌물을 준 자		입찰제한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입찰제한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입찰제한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입찰제한 3개월
마.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제한 1개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입찰제한 2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입찰제한 2년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입찰제한 2년
5.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담합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가. 담함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입찰제한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제한 1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제한 6개월
6.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불법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가.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입찰제한 8개월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입찰제한 6개월
다.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입찰제한 4개월
7.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자료유출 등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입찰제한 5개월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14.12.30 공포, '15.7.1 시행)
  - 이에 따라 제정(안)은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및 임직원의 재산등록, 협력업체의 행위제한·입찰제한 등 제재기준, 정책협의회 운영, 과징금 부과기준

- **협력업체가**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의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한을 규정**(법 제18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행위제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원자력발전공공기관 :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제정(안) 제9조는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입찰제한 등의 세부기준(별표 1)을 마련
  -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인 바, 일체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협력업체의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필요

문제점

협력업체의 등록요건과 절차 규정 부재

- 등록요건, 절차 등의 실체규정없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정(안) 제18조제1항에서는 등록취소나 입찰제한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입찰제한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상호 모순으로 제재 실효성 약화
- 따라서, 중대한 위반행위에까지 가벼운 입찰제한 등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고, 협력업체 또한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음

위반사실 관련 계약해지 여부, 임의규정으로 제재의 실효성 약화

- 협력업체가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규정
- 이는 임의규정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로 계약 해지를 회피하기 위한 협력업체 등의 불법로비 우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일 불분명

- 위반횟수의 기준일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규정
- 1차 위반행위와 2차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할 경우, 처분 적용 기준일이 ‘행정처분을 한 날’과 ‘적발한 날’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불분명하여 처분권자 임의로 판단할 우려가 높고
-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불법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 미흡

- **입찰제한 등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습위반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일반적 입법사례*와 맞지 않으며,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의견

- **협력업체 등록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률)** 협력업체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취소 근거규정 신설**
  - **(시행령)**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규정하고 있는 제9조 제1항은 삭제, 제2항에 입찰참가제한 외 **등록취소 추가**

    ※ 등록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개정 후 시행령의 등록취소 등 제재의 세부기준 정비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계약해지를 강행규정**으로 규정
  - 협력업체가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을 위해 **예외규정 신설**

-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후 위반 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차등**하여 적용

개선결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2호, 2015.6.30.)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별표 1]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입찰제한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입찰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 다 (생략)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입찰제한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2년 6개월	3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7개월	9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4개월	5개월
5)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1개월	1개월	2개월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2년	2년 6개월	3년
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2년	2년 6개월	3년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입찰제한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2년	2년 6개월	3년
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에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1호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2년 6개월	3년
2)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7개월	9개월
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2호			
1)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10개월	1년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개월	7개월	9개월
3)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개월	5개월	6개월
사.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3호	5개월	6개월	7개월

사례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라 한다)를 각 분야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기관·단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 제10조의2제3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위탁자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 개정안 제10조의2제4항은 인증서 발급, 인증시험 수수료 징수, 인증시험위탁자 요건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인증시험의 위탁자 업무범위 등을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민안전처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업무를 기업 재해경감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인증시험 업무는 법에서 정한 협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 ① ~ ④ (생 략)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생 략)

문제점

-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
  -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수립 대행과 우수기업 인증 대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임에도
  - 인증시험 위탁기관 대상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당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탁자 선정의 우려가 있으며,**

- **인증시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대상 단체의 로비가능성도 상존**

-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 개정안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탁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개선의견

- **인증시험 위탁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위탁업무 범위, 위탁자 선정방법을 규정**
- 공무원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법률에 신설**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결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3호, 2016.1.19.)

제10조의5(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 시험 실시 및 감독
5. 합격자 공고
6.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국민 알 권리

사례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④ 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법률 제50조의3은 행정청이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① 사전 통지·공고 절차 부재로 자의·편의적 재량권 행사 우려

- 행정청의 장이 장애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있도록 할 경우 **국민권익 침해 우려**
  - 공익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인하는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그러나, 개정안은 막연하게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장애물의 소유·점유자 부재 시 **행정청 재량에 따라 임의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
  - 처분의 사전통지(사전계고나 공고, 자진철거 기회 부여) 없이 행정청 재량으로 임의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형태의 비닐하우스나 농막, 창고 등 영농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점유자 부재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임의 철거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발생 우려**

※ 국토부에 '15. 10. 21. 유선으로 확인한바,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장애물은 주로 영농시설(비닐하우스, 농막, 농자재보관창고)과 컨테이너, 조경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이 다수임

②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성 결여

- 법 제31조제4항제3호는 민간위원의 자격을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 재량권 행사 우려**가 있음

- 특히, 본 위원회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이 하천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등 **국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적절한 위원 선정 시**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③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국민이나 기업의 **토지 이용·개발 및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위원회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개인·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로비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 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 본 법률(안)은 **부정 · 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 · 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개선의견

① **사전통지·공고절차 마련**으로 **절차적 정당성 및 국민권익 침해 최소화**

- 장애물을 긴급히 제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통지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긴급히 제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법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포함**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고* 후 제거 또는 변경토록 하위법령에서 규정**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장애물을 제거·변경토록 규정

②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정 방지**

- 본 법률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행령 제정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정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등 확보**

③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④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 본 법률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행령 제정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장치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 확보**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③ (생략)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③ (생략)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사례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6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부양능력의 판단기준 중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부양의무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제점

-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
  - 이 법 시행령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질병 등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 총리령에서는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의견

- **부양의무자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개정안 제8조제2호)

개선결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0호, 2015.12.3)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자동차등록령」제12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고,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및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이력
   다.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이력
   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정보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 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이력, 압류, 체납정보 등)**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

문제점

개인정보의 동의 및 제공에 대한 과도한 재량 부여

-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사목의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 및 그 외의 자에게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 제공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포괄적 백지위임 조항**으로 되어있어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토록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형해화** 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제3자 제공을 통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개선의견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 수정

- **개인정보의 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변경 시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적 측면으로 고려하여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정보를 제공토록 조문을 수정**하여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익 제고

개선결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69호, 2016.1.6.)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국민 안전

사례 1 교통안전법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5조(과태료) ①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제65조제1항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운행기록장치 도입배경
  -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게 하였으나, 아날로그 운행기록계가 제공하는 데이터(순간속도,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가 제한적이며, 정밀도가 떨어져 활용 미흡
  - 이에 따라 운전자의 다양한 운행정보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 Digital Tachograph)로 **전환 추진**

※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시간, RPM,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 추적,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통신상태의 오류검출, **교통사고 상황 등 각종 차량운행 데이터를 초단위로 저장하고 운행기록이 파일로 출력되어, 분석이 용이**한 저장장치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하여 운전습관 교정,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가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분석 시 파손형태, 노면흔적과 차량의 차종위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사고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운행기록장치 도입 연혁·내용 및 한계

- **(연혁)** 교통안전법 개정('09.12.29 개정, '10.6.30 시행)에 따라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 하고, **운행기록 정보를 6개월 동안 보관**하고, **교통기관이 요청 시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토록 함**

• 디지털운행기록 **미장착, 미보관,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버스와 법인택시는 2012년말까지, 화물자동차와 일반택시는 2013년말까지 의무 장착토록 함 (정부보조금은 대당 10만원 지원)

※ EU 29개국 및 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

- **(한계)**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만 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등 목표 달성이 어려움**

< 관련 사례 >

○ 차량영상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꾸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할때만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음 (전국택시공제조합 A 차장)(영상기록장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관건", 교통신문, '09.9.8.)

○ 서울시는 연 1,600억원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심거래내역이 추출된 택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차량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와 GPS를 활용하여 택시운행상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 조치(서울시, 연 1,600억원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한국택시신문, '14.3.13.)

○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부착해 운전자의 운행습관을 집중관리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66.1% 감소시켰다고 밝힘(교통안전공단, DTG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교통사고사망자 66% 줄여, 디지털타임스, '15.3.20.)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안) 내용

- 개정(안) 제65조 제4항 신설 규정에 따르면 운행기록을 장착하여야 하는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운행기록을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문제점

과태료 면제는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면제의 사유가 **고장·수리 등으로 불명확하고,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 동 제도를 악용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추진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보관·제출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자체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굳이 '면제'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임

- 법률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외에 과태료 면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이며, **그 외 법률은 감면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 면제규정을 둔 것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바,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임대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교적 명확한 요건을 갖추어 면제**를 하고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부패유발 요인으로 언론에서 지적
  → '공무상 주차' 진술서 한 장에 과태료 면제(KBS, '15.4.1)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 판단 과정에서 지나친 재량 부여

- 운송사업자 등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판단하는 요건도 부재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음

개선의견

「교통안전법」 제65조제4항 신설(안) 삭제

-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보관·제출토록 한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 그러나 위반행위에 대한 **'면제' 규정을 통해 제재수단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면제를 판단 시 모호한 요건에 의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어 삭제가 타당함
- 또한 「질서위행위규제법」에 따라 면제를 할 수 있음으로 '면제' 조항을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임

개선결과

해당조문 삭제

사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는 주차, 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개정령안 제41조는 화재 시 피난에 이용되는 대피통로가 주차장으로 겸용되거나 물건이 적치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

문제점

- 허가권자는 “주차, 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용 소지**

- 건설업자는 대피통로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로비 등 부패 유발 가능성 상존**

개선의견

- 개정안 제41조의 "주차, 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를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사례를 들어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5호, 2016.5.17.)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사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1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2. (생 략)

※ **[별표 9]·[별표 10]은 생략함**

[별표 9]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 [별표 10]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15.6월 시행예정)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안전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3조의4)
  - 안전인증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기준**(별표 5)을 제정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위반횟수(1차~3차)에 따라 처분기준을 가중**하고 있음
- 또한, [별표 9]의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 〔별표 10〕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도 **최근 3년간의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가중**하고 있음

문제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 불명확**
  - 위반횟수의 기준일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초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일만 규정하고 있어

- 2차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할 경우, 처분 적용 기준일이 '적발한 날'인지 '행정처분을 한 날'인지가 불분명하여 **처분권자 임의로 판단할 우려**가 높고
-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불법로비 등 부패 유발 가능성** 상존
- 또한,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개선의견

-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후 위반 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개선대상 :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별표 9]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
    [별표10]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3호, 2015.6.4.)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생략)

※ [별표 9] 및 [별표 10]도 동일방식으로 개선

평가대상 조문

제9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u>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u>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어린이 제품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법 제14조)
  - 사고원인 조사의 방법과 절차, 사고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
  - 제정(안)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어린이제품 사고 조사기관의 **자격요건·지정기준이 불투명**
  - 어린이제품사고 조사기관 지정요건으로 **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고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사고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저하**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고조사 기관을 지정할 우려**

개선의견

- 어린이제품사고 조사기관의 **자격요건·지정기준 구체화**

개선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3호, 2015.6.4.)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례 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 제2호	400만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 제3호	200만원
4.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 제4호	200만원
5.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	2000만원
6.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 제5호	100만원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의 개정(2015.7.29 시행)으로 **사업자의 보고의무**(법 제13조의2)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행위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추가**
  - 사업자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미 제출(2천만원)유사명칭 사용(100만원), 제품의 수거실적 등의 사항 미보고(200만원) 등

문제점

-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가 없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습위반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일반적 입법사례*와 맞지 않으며,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의견

-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마련**
  -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금액 설정**

개선결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6호, 2015.11.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과태료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한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규제 개선

사례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4조에 따른 부가금 징수에 관한 승인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4년 1월 1일

7의2.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의3.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 제44조의2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한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2항(규제 법정주의) 및 제8조(규제의 존속기간 및 재검토기한 명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에 의거 신설된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간 부재'**
  ※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은 법령에 명시('15.1.1. 기준 매 3년마다 재검토)

개선의견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간 설정**

개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0호, 2016.2.3.)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2016년 1월 1일

6 ~ 8 (생략)

사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⑬ (생 략)

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중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⑮ (생 략)

평가기준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현 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 및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 환경부(공공 인프라 구축)

○ (보급현황) '14년말 현재 전기자동차 3,044대(전기차 3,032대, 버스 12대), 충전시설 3,201기 보급(완속 2,964기, 급속 237기)

* 연도별 차량보급대수 : ('11) 338대 → ('12) 753대 → ('13) 780대 → ('14) 1,173대

○ (보급목표) 전기자동차 '20년까지 20만대(누적) 보급, 공공급속충전시설 '17년까지 637기 확충

○ ('15년 추진계획) 전기자동차 3,090대, 충전기 3,115기 보급(완속 3,015기, 급속 100기)

- 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9백만원, 개인 충전시설 6백만원, 세금감경 최대 420만원(총예산 788억원)
- 충전시설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간 연결 지점 등은 우선 확충하고, 선도·보급도시는 전기차 보급 대수 등과 연계하여 확충

  * 고속도로 30기, 선도·보급도시 5기, 수도권·경상권·전라권 65기 등

○ (설치·운영) 공공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이 도맡아 하고 있으며, 15.3. 이후 운영관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

□ 산업통상자원부(민간 인프라 구축)

○ (배터리 리스사업)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관리 비용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

- 제주도를 대상으로 '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 목표
- 택시·버스 업체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만 지불, 배터리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고 배터리 대여·관리 및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

○ (민간 유료 충전사업) 제주지역에서 민간 컨소시엄(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을 구성하여 유료 충전사업 시범추진('15년~)

- 민간 유료 충전사업은 이미 설치된 급속 및 완속충전시설(약 250기)을 활용하되, '17년까지 충전시설 확충 추진(약 5,830여기)

  * 충전시설 확충계획 : 완속 2,655기, 급속 175기, 이동형 등 3,000기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위탁자 제한에 따른 특혜 선정 가능성 및 민간 사업자 진입규제**

  - 법에 한국환경공단 등 **특정 몇몇 기관을 위탁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탁자 선정의 특혜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제한
    ※ 현재 충전시설 설치·운영 민간업체로 POSCO IC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가 있음(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민간업체 수 증가 가능)

- **충전시설의 부실 설치 및 운영 가능성**

  - 개선안은 환경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위탁자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기술력이 부족한 단체나 법인이**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운영의 부실화 우려**가 있음

개선의견

- **전기충전시설의 위탁자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 위탁자 자격 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위탁에 대한 감독 규정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⑬ (생략)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례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등록 지정)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등록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전자등록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증권등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증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등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제정안 제12조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등록회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할 증권등의 발행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증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등

문제점

등록 지정 여부를 결정할 판단의 기준 부재

-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회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 등록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전자 등록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우려**
-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자등록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우려**

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부재

- 등록 신청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행인 등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알 수가 없으며, 전자 등록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할 우려

개선의견

등록 지정 여부의 결정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지정을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 가능하며,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

등록 지정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

※ 특별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

등록 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 마련

개선결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제6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는 사전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주식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에 따라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나. 같은 종류의 주식등의 권리자 간에 그 주식등의 권리 내용이 다르거나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해당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신청된 경우로서 그 주권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는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주권등에 대한 주식등의 수량으로 한정한다.
4.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그 밖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정누수 방지

사례 1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제8조(지역센터 지정 등) ① 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분야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을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로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노후준비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지정기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 평가대상 조문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분야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을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특화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 규정 미비

- 「노후준비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지역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함
- 이에 통상적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특화된 기관에 대한 지역센터 지정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지정 대상을 선정할 우려**

개선의견

특화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에 구체화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1호, 2015.12.22.)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대상 조문 2

제9조(지역센터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평가·현장평가·만족도평가로 실시한다.

③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6월 20일까지 지역센터의 실적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센터의 장은 평가가 끝나고 1개월 내에 제6항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지역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의 장의 임명권자에게 인사상 조치를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노후준비지원법」제9조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6월 20일까지 지역센터의 실적 평가를 마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시행령 제9조제7항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장의 임명권자에 인사상 조치를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문제점

지역센터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

- 지역센터 평가업무는 결과가 공개가 되며,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등 지역센터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그러나, 「노후준비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센터 평가 관련한 세부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우려

개선의견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에 구체화하도록 규정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제 정 안	개선의견(예시)
제9조(지역센터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평가·현장평가·만족도평가로 실시한다	제9조(지역센터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평가·현장평가·만족도평가로 실시하고, <u>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사례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9호, 2014. 6. 3. 제정, 2015. 6. 4. 시행)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u>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u>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 보조금·**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규정

문제점

- **기부금 출납 불투명**
  - 기부금품 중 금전인 기부금을 현금으로 접수·집행할 경우 출납 불투명 우려
  - 기부금을 기관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기관 계좌에 함께 예치할 경우 기부금만에 대한 이자 수익 파악 곤란
- **기부금품 관리 불투명**
  -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접수·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운용 투명성 보장 곤란

개선의견

- **기부금의 수입·지출은 기부금 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시행령에 규정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내역 공개 제도 마련(시행령에 규정 신설)**

개선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6.1.)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책임성 강화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
2.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이 저장된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그 요구받은 자료에 대한 반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사본 등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이 저장된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그 요구받은 자료에 대한 반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사본 등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행위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고, 국내로 유출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도록 하며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 적시를 요구(대법원 2012도675 판결)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실무상 벌금형 적용에 곤란을 초래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상한 금액을 정액화하려는 것임

< 관련 판례 >

○ 대법원 1999.03.12. 선고 98도4704 판결 (재산상 이득액의 정의)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도675 판결 (재산상이득액 심리 미흡)
제1심은 위 피고인의 위 규정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 그것이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였을 뿐이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1심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려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 이득액'이 막연히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얼마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

제재규정의 합리성 결여로 인한 법적안정성 위해 우려

- 불법·편법·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의 법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책임추궁의 정도가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됨으로 사회·국가적 안정성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 재산상 이득액의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벌칙적용의 상한액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비밀의 재산가치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분 상당과,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 등의 가치이므로
-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안의 벌금 최고액(1억원 내지 5천만원)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관련 사례 >

○ 특허청이 국내중소기업 1000개를 표본으로 한 실태조사와 최근 3년간 영업비밀관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로 입은 평균 피해액은 설계도의 경우 13억2000만원, 해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4.01.22.)

개선의견

제재규정의 적정성 마련

- 현실성을 반영한 벌금 상한액 상향
-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개인과 차별화된) 제재안 마련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2. (생략)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2. (생략)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ㅇ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2. (생략)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ㅇ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2. (생략)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u>**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u>.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 제18조제1항의 경우: ㅇㅇ억원 이하의 벌금</u> <u>2. 제18조제2항의 경우: ㅇㅇ억원 이하의 벌금</u>

유사입법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08호, 2016.3.29.)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6. (생략)

6의2.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畫),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생략)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⑦ (생략)

〈 외국 유사 입법례 〉

법률명(국명)	형사처벌	비 고
통일영업비밀법(미국)	o 벌칙규정 없음(민사적 구제수단만 규정)	
경제스파이법 (미국)	o (국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의 벌금 * (법인) 1천만불 이하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 o (국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법인) 500만불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독일)	o (국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o (국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일본)	o (국내·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 * (법인) 3억엔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중국)	o (국내·외) 10,000 위안 이상부터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	

사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3 중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제2호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 시기를 넘겨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라. 법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개별기준) 변경내역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현행	개정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1차 : 1인당 5만원, 합산액 100만원 2차 : 1인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3차 : 1인당 10만원, 합산액 300만원	1인당 3만원, 합산액 100만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1차 : 1인당 5만원, 합산액 100만원 2차 : 1인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3차 : 1인당 10만원, 합산액 300만원	1인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100만원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100만원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던 기준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부과 처분하도록 변경**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부과**

◎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단일 기준에 따라 부과 처분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위반횟수 산정 등에 대한 일반기준 삭제(제1호 가목)**

※ 일반기준 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문제점

◎ **법적 형평성 저해 및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 저하**

-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분할 경우,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가 다른 자에게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일반적인 입법례와도 맞지 않음**
- 유사한 시점에서 위반행위를 반복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어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칙 부과의 효과 저하 및 위반 행위 증가 우려**
  ※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경우 고용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인정신청 관련 업무에 차질이 예상
- 특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단일하게 처분할 경우 **거짓신고 방지 효과 저하** 우려 및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부과, 실업 급여 산정, 이직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 곤란 및 민원 불편 증가 우려**

< '13 ~ '14년도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

구분		2013년도 1차	2013년도 2차	2013년도 3차	2014년도 1차	2014년도 2차	2014년도 3차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10. 1. 시행後처분	2,018건 185백만원	6건 2백만원	1건 0.1백만원	72,982건 13,176백만원	6,777건 2,163백만원	2,574건 1,651백만원
	건당 평균	92천원 1.8명	333천원 4.2명	100천원 1명	181천원 3.6명	319천원 4.0명	641천원 6.4명
	'13.10. 1. 시행前처분	86,304건 32,786백만원			38,107건 18,237백만원		
	건당 평균	380천원 -			479천원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13.10. 1. 시행後처분	17건 16백만원	-	-	732건 908백만원	37건 50백만원	2건 2백만원
	'13.10. 1. 시행前처분	433건 1,020백만원			122건 275백만원		

※ '14년도에 단일처분이 있는 사유는 가중처분 규정이 '13. 8. 6. 개정, '13. 10. 1. 시행되어 종전의 규정에 처분하였기 때문임

개선의견

- 개정안 별표3 중 제1호(일반기준) 가목 존치
- 개정안 별표3 제2호 나목~라목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 처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 존치
  - 개정안 나목은 현행 가목의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 처분 규정 존치
  - 개정안 다목은 현행 나목 규정 존치
  - 개정안 라목은 현행 다목 규정 존치

개선결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 다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례 3 군형법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2조의2(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
  -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군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유지에 미흡
  -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 폭행과 협박 근절,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점

- **낮은 벌금형으로 범죄 억제력 약화 및 제재규정 형평성 저하**
  -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벌금형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불일치 할 뿐 아니라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

- 벌금은 죄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남**

> **선원법**
> **제165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철도안전법**
>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권고기준'** ('09.8월),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5천만원
국회 사무처 예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국회사무처 양형기준위원회 권고안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개선의견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의견
제62조의2(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ART

Ⅲ

자발적 개선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규정명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대한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5개 지방사무소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활동에는 한계**
  - **지방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

개선의견

-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계기별 감찰활동 이외에 **지방사무소에 자체 예방 감찰활동 기능을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
  - **조사정보 유출 및 금품수수** 등 은밀하게 행해지는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부패예방활동의 효율성 제고**
  - 지방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무소장 및 총괄과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제거**

개선결과

제7조(예방감찰) ① 예방감찰은 비위·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 시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예방감찰은 기강확립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u>③ 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 총괄과장은 자체사무소에 대한 예방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u>

규정명 신고인 가명처리 및 신원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대상 조문

해당조문 없음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피조사업체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
  - 신고인 관련 정보의 노출 우려 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기피**하게되고 실제 정보 노출 시 **신고인이 불이익을 겪는 문제점** 발생

< 관련 사례 >

○ …중소기업들의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홈쇼핑사의 보복성 조치를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막상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경기일보, 2015.10.19.)

개선의견

- 신고인 관련 정보의 노출을 예방하여 불공정거래에 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피조사업체 등의 **보복성 행위 방지**

-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인 정보의 가명변환** 및 신고인 실명 및 관련 정보의 유출금지를 통한 **불공정 거래신고의 익명성 보장**

개선결과

> **제8조(신고인 인적사항 누설 금지)** 가명처리 신고사건의 담당자나 문서담당자 등 가명처리 신고의 접수·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명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소관부처 : 경찰청

평가대상 조문

제8조의2(**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경찰유관단체원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각급 경찰관서에서 민관치안협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단체를**(이하 경찰유관단체) **모집·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주요 경찰유관단체 현황 〉

협력단체	설치목적	설치근거
경찰발전위원회	치안정책 수립 및 경찰행정 발전도모 민·경 협력체계 구축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 공동안전망, 지역안전활동 강화	매년 4월 정비지침 하달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감시, 인권경찰상 정립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일부 유관단체의 경우**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구성원이 유착,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이 운영되거나, 규정 상에 해촉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존재**
  - **비밀준수 의무, 업무관여 금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도 미흡**하여 부패 발생 위험이 높음

〈 주요 경찰유관단체 의무규정 유무(예시) 〉

협력단체	비밀준수	업무관여금지	알선청탁금지
경찰발전위원회	○	○	○
인권위원회	X	X	X
외사협력자문위원회	○	X	X

< 관련 사례 >

○ '14년 00청 경0 000은 소속 관서 내 보안협력위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수수 ⇒ 해임

- 위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14년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과)**와 공동으로 개선 방안 마련**(전문가 의견 등 적극 수렴)

- **개정안에서 경찰유관단체원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할 경우 해촉 등 조치를 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부족**
  - 지위 남용, 부적절한 처신 등은 **해석의 범위가 커 재량남용의 위험이 있고,** 부정행위를 한 **경찰유관단체원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할 우려**도 있음
  - **경찰유관단체원의 범위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하거나 관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혼선 우려**

- **각 지방청·경찰관서 등 의견 수렴** 시에도 **부정행위의 유형과 경찰유관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수

개선의견

- **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한 행위 유형을 직무관련 금품수수·청탁·비밀누설·이권 개입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
- **경찰유관단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정의 조항 추가**

개선결과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의2(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규정명 범죄수사규칙

소관부처 : 경찰청

평가대상 조문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수사과정확인서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고, (중략)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조사하면서,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진술조서〉 수사관의 질문과 대상자의 답변을 ‘문답의 형태’로 작성
  ※ 〈진술서〉 조사 대상자가 진술 내용을 자술하는 형태로 작성

문제점

-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

- **진술조서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 72조」에 따라, **수사관의 조서 위·변조나 직권 남용 등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수사관은 진술조서 작성 시 수사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 수사서류에 편철하고, 조사자에게 이를 확인시킨 뒤 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함
- 이에 반해, **진술서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가 불비, 진술서 위·변조, 허위작성 등 직권남용과 이를 빌미로 한 대가 요구·로비 등 우려**
  - 진술서는 서류 말미에 진술자의 서명·날인만 받고 있음
  - 진술서 역시 진술조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통제 장치 필요

개선결과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규정명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소관부처 : 문화재청

평가대상 조문

제8조(대관료의 산정)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행사
2. 국유재산법 제34조 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무형유산원은 시설의 일부를 무형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 규정을 제정('15. 1월)하여 운영
-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시 대관료를 면제하는 규정은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이 있음
  - 현행(안)은 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량 통제 장치 등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재량권 통제장치가 미비

< 관련 사례 >

○ 세종문화회관 대관 관련 청탁, 횡령 등의 비리 발생으로 공연사업본부장 구속기소, 청탁자 불구속 기소("세종문화회관 대관비리 얼룩", 국민일보, 2011. 7.)

개선의견

- 원장이 인정하는 대관료 면제 행사에 대하여 구체화 또는 규정 삭제 검토

< 대관료 관련 타 규정 >

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

제9조(대관료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8조(대관료의 산정) 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8조(대관료의 산정)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비영리 행사
2. 국유재산법 제34조 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규정명 의약외품 범위 지정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대상 조문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아. (생 략)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 4) (생 략)
5)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평가항목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으로 의약외품을 분류하고 있음

- 한편, 의치(틀니)의 세척·소독제,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등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구강에 직·간접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은 약하나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임
  - 의약외품은 제조·수입단계에서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품목별 허가·신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되, 취급·사용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허가·신고된 효능·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선택·사용 가능하도록 안전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의치(틀니)를 제외하고는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일명 '치태염색제'*처럼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 곤란

  * 치태염색제: 치아 표면의 치태를 염색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칫솔질 개선과 치아위생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품

개선의견

- 의치(틀니)는 물론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치태염색제'처럼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개선결과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아. (생 략)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 4) (생 략)
  5)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6) (생 략)

규정명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평가대상 조문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위탁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평가항목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행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개정안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 동등결합판매는 도매제공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도 적용

  -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결합판매를 위해 인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위해 인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① 자신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보다 또는 ②이를 제공받는 사업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 등 거래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 (문제점)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항목별로 규정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나	다	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u>위탁판매를 포함한다</u>)**하는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동등 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결합 판매하는 경우와달리 부당하게	다른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개선의견

- 나. 다. 라 항목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위탁판매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공통으로 포함

개선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위탁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위탁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u>제공(위탁판매를 포함한다)</u>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u>제공(위탁판매를 포함한다)</u>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규정명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 운영 훈령

소관부처 : 국방부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연구관 자격 및 구비서류)
① 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관련 분야의 학위 및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미취업자로 연구수행년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아니한 사람</u>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관의 자격에 "미취업자로 연구수행년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제10조제1항제3호)
- 연구용역의 연구비가 과제당 1,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며, 용역 계약관련 다른 어떤 법령도 이러한 제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과도한 기준 설정으로 준수부담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동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기준제한은 특정인에게 특혜 수단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부패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는바 개선이 필요함

개선의견

- 제10조제1항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패방지법」 및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수정 **또는 재검토를 권고**함

개선결과

> **제10조(연구관 자격 및 구비서류)** ① 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관련 분야의 학위 및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 1. ~ 2. (생 략)
> 3. 미취업자로 연구수행년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아니한 사람

규정명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소관부처 : 국방부

평가대상 조문

제115조(인수·합병 등)
⑤ **방산업체 대표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 매각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방산기밀 유출이 우려될 시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 기무부대에 보안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방산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 매각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방산기밀 유출이 우려될 시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
- 방산기밀의 유출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방산 업체가 매각·파산 등으로 인해 방산기밀 유출이 우려될 시에 **방산업체 대표가 어떤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구체화하지 않고, 막연하게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함
- 조문이 구체화 되지 않아 방산업체 대표가 어떤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 보안대책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 통제에도 제한이 따를 것이 예상됨
- 위와 같은 요인은 방산기밀의 유출·거래 등으로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의견

- **동 조항에서** 방산업체 대표가 수행해야할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조문에 나열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개선결과

제115조(인수·합병) ⑤ 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대표는 인수·합병 추진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자료 회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방산업체 대표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 매각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방산기밀 유출이 우려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 기무부대에 보안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비밀의 인계·인수
2. 컴퓨터 및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장비의 임의 반출입 차단
3. 소속 직원 등의 기밀누설 방지서약
4. 그 밖의 방산기밀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규정명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신설**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 관련 사례 >

○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이 문제…어려운 재정에 엎친 데 덮친격(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에 세금 4조 7,000억 투입, 조선비즈, '15.9.9.)

○ △△시가 지난달 강원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에서 산림사업 보조금 환수 소홀 등의 부적정을 이유로 시정14건, 주의 8건 등 총 49건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아시아경제, '15.9.11.)

- **우리시의 경우에도** '14년말 현재 28개 사업 5조 6,0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중(16개 사업)이거나 추진중(12개 사업)에 있음
  - 그러나,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MRG미달과 요금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13년('02~'14)간 6개 민간투자 도로·철도에만 총 2,01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 MRG미달 1,138억, 요금미인상분 지원 873억
-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할 때,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이 '15년 한해에만 635억원에 이르며, '17년 726억, '18년 785억원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수요예측 잘못으로 향후 20년간 2조 1천억원을 세금으로 더 메워야 하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리 부실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

< 관련 사례 >

- ○ 수요예측 부실 후폭풍…거가대교에 시민혈세 1조 낭비할 판(매일경제, '12.8.7.)
- ○ 사업비 부풀리기, 저가하도급 발주로 9,173억 부당이득(부산경실련, 거가대교 사업비리 의혹 검찰 고발, 뉴시스, '11.11.23.)
- ○ 2011년 개통이후 운행 3년 만에 세금 1,237억원 쏟아 부었으나, 실제 이용객 3만 7천명, 예측인원 20만명의 18% 수준(세금먹는 하마 … 부산-김해 경전철, 매일경제, '13.12.18.)

개선의견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민자사업 사전검증 및 협상안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저감**토록 하고

- 민간투자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협상전략을 주도**하고 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는 **재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예시

현행	개선권고안
조항 신설 (관리조례)	○ **민자사업 관리강화 조항 신설 ☞민간투자사업관리조례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현행 민간투자사업 추진 프로세스에서 ① 사업추진 타당성 사전 검증 절차 신설 ② 실시협약 협상을 당초 사업부서 → 사업부서와 부산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협상실시토록 변경 ③ 협약서 최종검토 절차 신설토록 변경하고 - 변경된 사업추진 프로세스(절차)를 조례상에 명문화함 (별표1)

개선결과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 주요내용은 개선권고안과 같음〉

규정명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7. (신설), 8. (생략)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④ (신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
  - 아래의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현장확인을 통한 감시·평가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공사
    - 5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 1억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
  - 사업 발주과정·계약체결과정·계약이행과정 등 3단계 평가 주관
  -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 협의회 참여

문제점

- 시민감시관의 직무가 대규모 공사·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시민감시관의 권한이 계약 업무 및 시정·감사 요구에 한정되어 있어 소극적인 역할 수행

개선의견

- 시민감시관이 시정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권한 확대 권고

개선결과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10억원 -------------

   나. 1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용역 등

   다. (현행과 같음)

   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고충민원 공동조사·처리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5. 제18조에 따라 의뢰·요청된 감사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직권 조사활동 대상에 대한 조사
7.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
8. 대표 시민감시관의 협의회 참여

<u>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u> ①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시민감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의 감시·평가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시민감시관에게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민감시관은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민감시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민감시관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명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9조(부패행위자의 처리) ①~③ (신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 부패행위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등 부패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2차 부패행위 발생 가능

개선의견

-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

개선결과

제9조(부패행위자의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명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방지 규정 중 제척, 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촉된 위 원이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 또한 경영실적 평가에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기관의 역량 뿐만 아니라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개선의견

-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경영실적평가에 투명경영 평가도 포함 되도록 권고

개선결과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규정명 감정평가 실무기준

소관기관 : 한국감정원

평가대상 조문

400(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 (중략)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감정평가서)
4. 감정평가서의 서명과 날인
②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600(물건별 감정평가)
610. 토지 및 그 정착물
1. 토지의 평가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는 공공보상, 법원경매, 은행 담보 등의 기준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업무 특성상 강한 객관성, 신뢰성, 책임성 요구**
- 현행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는 **감정평가사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이를 악용한 부실평가 발생
  ※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 시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물건의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 3방식 병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실 평가 사례를 볼 때, 부실평가의 책임과 징계를 **평가담당자 외 심사자까지 확대 필요**
  ※ 2014년도 A 평가 건의 경우 최고 감정평가액과 최저 감정평가액 총액 차이가 1조 4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감정평가사만 4명 징계

개선의견

- 감정평가사의 재량 제한을 위한 객관화 및 구체화
- 3방식 병용 등 시산가액 조정 절차 강화
- 평가에 대한 심사자의 역할 명시

기대효과

- **'15년 민간감정평가법인 부실평가 건수* '14년 대비 1/10로 축소**
  ※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결과 : '14.1~10월 : 11건, '15.1~10월 : 1건
- 감정평가 부문의 **부패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건의를 통해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선 성과**

-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로 **부패위험요인 제거**
- 민간감정평가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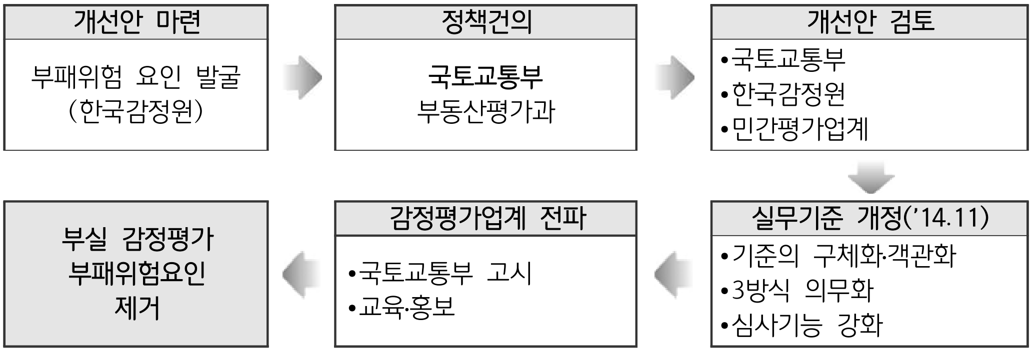

개선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3호, 2014.11.11. 시행)

400(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 (중략)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00(감정평가서)
4. 감정평가서의 서명과 날인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감정평가관계법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되었는지 여부

600(물건별 감정평가)
610. 토지 및 그 정착물
1. 토지의 평가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규정명 경마매체관리규정

소관기관 : 한국마사회

평가대상 조문

경마매체관리규정 제24조(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③ 경마매체의 취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유익한 경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경마정보의 수집 및 취재에 있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공정하여야 한다.
3. 마권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회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득한 경마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등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취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본회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회의 재산을 파괴·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경주마사 출입 가능한 취재종사자의 지득 정보 악용 사례 발생)** 경주마사 출입 및 관계자와의 밀착 취재가 가능한 **경마매체 종사자가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을 현혹하는 과대·과장 홍보성 ARS예상 영업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고객 민원이 VOC(고객의 소리)에 지속 신고됨**
  - 정보에 예민한 고객 특성을 악용하는 취재종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원천 차단필요
  - 투명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달성위해 교육·홍보 외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 노력 요청

현 황

- 마사지역 출입 등 정보접근권을 부여받은 **경마매체 취재종사자 중 일부가 취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로 '유료 ARS' 등 경마정보 제공업을 운영하고 있음**
- "경마매체관리규정"에 취재종사자의 동 영업행위를 금지대상으로 명시하기 어려워 ARS경마정보제공업에 대한 원천 차단은 불가

〈 경마매체 현황 (2015.10월) 〉

전문지	예상사이트	유료ARS업체	취재종사자
경마문화 등 26개	검빛경마 등 8개	790개	70명

- 다만, 일부 관련자가 ARS 영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마사회에서 확인받은 공신력있는 정보처럼 고객을 허위로 현혹하는 비윤리적 사례"**가 지속 발생함
  ※ ARS영업 관련 비윤리적 홍보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13년 4건→'14년 9건, 125%증가)

문제점

- (고객) 불건전한 경마 ARS 예상영업방식*으로 파생되는 고객의 재산상의

손해** 및 혼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는 바, 이를 방치할 경우 최근 “기사형 광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언론보도 사례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경영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대내: 개인에 대한 피해발생을 호소한 고객불만제보사례(VOC, 2015. 8월)
사설경마 보다 개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예상가의 잘못된 장담에 의한 피해입니다. (중략) 경마시행체이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사회는 강력한 대처방법과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피해자 발생을 보도한 사례 (KBS, 2015.7월)
이게 기사야? 광고야? '기사형 광고' 논란 KBS TV 2015.07.19. 네이버뉴스 먼저 방금 들어온 부동산 특보 소식입니다. 김 기자, 어떤 상품입니까?" 종합편성채널의 현직 뉴스앵커가... 인터넷 신문에 홍보성 기사까지 냈다는데. 기사를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백 여 명이 넘습니다. " <질문...

* ‘마사지역 출입기자 신분으로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다’, ‘이 정보는 제한 구역인 마사 지역 출입을 통해 확보한 승부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다’등의 내용을 직간접으로 홍보하는 행위

** 고객 1인당 일평균 구매액은 560,745원으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할 경우 상당금액이 고객재산상 손해로 이어짐(’15.10월 기준)

– **(공정경주) 일부계층에게 정보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인식으로 경마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

•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영업형태를 방치할 경우 “경마 승부에 관한 주요정보가 일부 계층에게 독점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경마 시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제도화) 현행 규정 상의 준수의무(제24조)에 동 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이 미비하여 제재 및 처벌 곤란**

• 매체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성·투명성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로 마사회가 ARS 영업행위를 제재할 경우 시행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동 규정 제2호) 경마정보의 수집 및 취재에 있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공정하여야 한다.

개선의견

- **(규정개정)** 마사지역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종사자의 ARS 예상영업활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새로이 명시함으로써 고객민원을 해소하고 공정경마문화를 조성**

- **(고객캠페인시행)** 불건전ARS예상에 대한 고객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 **오늘의 경주 및 경마방송통한 34회 홍보**

  ※ 성과 : ARS예상관련 민원감소('14.9건→'15.3건) 및 관련칭찬증가('14.2건→'15.8건)

개선결과

한국마사회 소관 경마매체관리규정(2015.7.13. 시행)

제24조(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마정보를 제공할 때 본회에 등록된 취재종사자임을 밝히거나 마사지역 출입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서는 안 된다

규정명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평가대상 조문 ▌

제19조(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②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퇴직일(기금본부 임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기금본부 외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4항의 별지 제20호 **퇴직 후 재취업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퇴직 후 재취업정보 조회(이하 생략)**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외부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07년 78.5조원 → '14년 164.9조원)
  - 기금의 외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영향력 증가와 더불어 **기금을 외부 자산운용기관에 배정하는 임직원의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 공단은 **임직원들이 기금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퇴직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도*'**를 도입('11.12월)

  * 퇴직한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하여 6개월간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

  - 하지만, 퇴직자의 다수가 **퇴직전에 재취업기관을 확정**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예정 임직원**이 퇴직전에 **재취업예정 기관을 상대로 유리하게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2014년	2013년	2012년
퇴직자	25	9	8	8
재취업자 (A)	20	6	8	6
퇴직후 1주일 이내 재취업자 (B)	13	4	4	5
재취업자 중 1주일 이내 재취업 비율(B/A*100)	65%	67%	50%	83%

  - 또한, 퇴직임직원 재취업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정보조회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제출 실적이 저조**

    ※ '14.12월 기준, 기금운용직원 195명중 103명 제출(제출비율 52.8%)

개선의견

- **국내 연기금운용기관 최초로 '퇴직예정 임직원의 재취업예정 기관**에 대하여도 **6개월간 거래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위상과 **제도 도입시 국내 타 연기금운용기관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제도 마련**

〈 퇴직임직원의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도입 현황 〉

구 분	퇴직임직원의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여부*	퇴직예정 임직원의 재취업예정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여부
A 기관	○	×
B 기관	○	×
C 기관	○	×

* 공단에서 운영중인 ‘퇴직후 재취업 정보조회’ 제도 도입기관은 없음

- **국내연기금 운용기관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퇴직후 재취업 정보조회’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여 전관예우 방지 및 부패가능성 사전 차단**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NPS 번호* 도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보조회동의서’ 전수 제출****

  * NPS번호 : 국민연금 전산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전 국민 개별 식별번호

  ** ’15.9월 기준, 기금운용직원 247명중 247명 제출(제출비율 100%)

개선결과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2015.07.15. 시행)

제19조(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②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취업일 전이라도 해당기관에 대한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의 별지 제20호

퇴직 후 재취업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성　　명 :

■ NPS번호 :

1. 퇴직 후 재취업정보 조회
   본인은 (중략) 준법감시인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이용한 퇴직 후 재취업정보 열람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 (재취업정보 조회 목적), 나. (조회 항목) : 생략

다. (조회 및 보유 기간)
 ○ 조회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단,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일 경우 5년)

 ○ 이용 및 보유기간 : 퇴직일로부터 5년

라. (재취업정보 조회방법) 국민연금 업무시스템의 ‘가입자자격원부’ 조회(이하 생략)

규정명 계약규정

소관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평가대상 조문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등 제한)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입찰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개월 이상부터 2년 이하까지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원 입찰참가업체가 퇴직직원을 고용하여 입찰 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퇴직자 고용 특례 제공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그간에는 우리원 퇴직자를 고용하여 직접적인 특례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으나, 입찰업체가 퇴직자를 고용하여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한 사례가 발생함
- 또한, 입찰참가 시점부터 용역제공완료일까지 우리원 퇴직자의 고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함

개선의견

-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경우 퇴직자의 업체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또한, 입찰참가자로부터 우리원 팀장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퇴직자 영입현황도 점검하여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

개선결과

한국예탁결제원 소관 계약규정(2015.8.19. 시행)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등 제한)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입찰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개월 이상부터 2년 이하까지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16\. (신설) 당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다만, 간부 및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자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퇴직임직원 윤리강령

소관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평가대상 조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
- 퇴직임직원 윤리강령 제3조의2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는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배제,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 중임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영리사기업체 13,586개(인사혁신처 고시기준)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있는 **재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그러나 공사에서 위 법규가 적용되는 (등기)임원은 사장·감사 포함 5명에 불과하며 **일반 퇴직 직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 불비**
  - 2014.9. 자체 규정인 「퇴직임직원 윤리강령」제정으로 퇴직임직원이 재취업 후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기준(공사 담당자와의 연고를 선전 및 이용 금지 등)에 대해서만 명시
- 따라서, 그간 별도의 통제·심사가 없었던 **일반 직원의 퇴직 후 관계법인 재취업에 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특혜발생 소지 차단의 차원에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선제적·자발적으로 도입,** 심사 후 부패발생 가능성 인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차단하여 전관예우 등 **청렴성 저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부정부패 연결고리 제거**

- 기관 특성에 따라 직원 재취업 적정성 심사대상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 폐기물 운반업체로 설정

개선의견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재취업 심사기능 수행기구 설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제9조) 기능에 준하는 자체 취업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 2013년도부터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공사 **'반부패·청렴 추진단'**(위원장 : 상임감사)에 동 심사기능 부여

퇴직임직원 윤리강령 개정 ⇒ 퇴직 직원의 재취업 제한규정

-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성을 고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의 폐기물 운반업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직원은 취업 전 미리 감사실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반부패·청렴 추진단'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 이전(원칙적으로 5년)의 담당업무, 직책, 비위행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취업 여부 심사

개선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임직원 행동강령(2015.11.6. 시행)

제35조(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부패방지 청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부패 청렴추진단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이 강령의 유지·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2. 반부패 청렴업무의 추진·실행·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퇴직 직원의 재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패방지·청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퇴직임직원 윤리강령(2015.11.6. **시행**)

제3조의2(퇴직 직원의 재취업심사) ① 퇴직 직원(「공직자윤리법」적용을 받는 임원 및 공사 「비정규직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제외)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 운반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무수행개시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감사실에 알려야 한다.

② 감사실에서는 제1항의 재취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임직원 행동강령」제35조에 따라 퇴직 직원의 재취업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직무수행개시 예정일 도래 이전에 퇴직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취업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해당 퇴직 직원의 재직 시 담당업무(퇴직 전 5년간 기준), 담당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직급 및 비위사실 존재여부 등을 포함하여 재취업대상 기업과 해당 퇴직 직원과의 업무관련성 존재 여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규정명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평가대상 조문

제32조(포상 및 징계)
② 소속부서의 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하 생략)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비위행위자 처벌제도 현황**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임직원 행동강령 제106조]
  - 금품·향응 50만원 이상 수수 시 "해임" 양정, 업무상 횡령·배임 시 최저 "감봉"이상 양정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1,2]
  - 징계처분자에 대한 연봉 감액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징계처분	연봉 감액내용
해 임	급여 : 일할 계산 / 퇴직금 : 전액지급
정 직	급여 : 불지급 / 성과연봉 : 50%감액
감 봉	급여 : 1개월당 감액(연봉월액 1/60) / 성과연봉 : 20~30%
견 책	성과연봉 : 10% 감액

  - 견책·감봉(2회), 정직(3회) 승진대상 제한 [인사관리규정 제106조]

문제점

- 높은 징계양정 적용, 연봉 감액 및 승진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행동강령 위반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 강화 필요
- 비위행위 발생 시 징계처분자 정보 비공개로 인한 **전 직원 대상 부패 예방효과 미흡**
  ※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실명 정보 공개 필요

개선의견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사내 홈페이지 내 "실명 공개"** 도입

- 행동강령 위반직원 지속 발생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사내 웹사이트에 **부패행위자 실명 공개로 직원 경각심 고취**

구 분	주 요 내 용
공개 대상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된 자
공개 내용	성명, 사번, 비위내용, 징계사항 등
공개 방법	사내 인트라넷「청렴윤리 포털」"부패행위자 실명공개" 사이트
공개 결정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공개여부 및 공개기간(6개월 이내) 등 결정

개선결과

한국전력공사 소관 임직원 행동강령(2015.5.21 시행)

제32조의 2(부패행위자 실명공개 등)

①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명, 비위내용 및 징계사항 등을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규정명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소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평가대상 조문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인력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구성
    ※ 급식보조 인력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타 기관 대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매우 적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인력구조 현황 〉

구 분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 원	5	2,685	13	-
현 원	5	2,597	4	18

- 문제점
  -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이 극히 적어, 관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 채용은 정규 직원 채용시에만 금지
  - 채용비리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빈발

개선의견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 및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 조항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적용

개선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2014.12.29 시행)

제6조(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다만,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은 특별채용 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201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행일 : 2016년 7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이 진 석

담당사무관　　이 주 현

담당주무관　　이 진 희

TEL : 044) 200 - 7657, 7655

FAX : 044) 200 - 7941